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

(의안번호 제·66호)

- 2000. 10. 25.
-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0. 6.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0. 10. 9.
다. 상정일자 : 2000. 10. 25.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104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1회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2000년 시행)으로 변경된 내용의 반영과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신설을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납세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변경(안 제6조의2)

(2)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변경(안 제14조)

- 동위원회의 기능을(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변경)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

-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3)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신설(안 제14조의3)

-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함
-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재근)

가. 검토내용 : 생략(검토보고서 참조)

나. 검토결과

현행지방세제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 법 제39조가 삭제되고, 법 제38조2호이 신설되었기 납세완납증명서와 미 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변경하고, 근거법 조문을 수정(안 제6조의2)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변경하여 지방세에 관한 의의신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안 제14조제1항)
- 지방세심의위원회조직 및 임기·자격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동 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14조제2항)
-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도록 하며, 동위원회의 조직·임기·자격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동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함. (안 제14조의3, 제1, 2항)

□ 검토 의견

-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이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의 기본법인 지방세법이 1999. 12. 28 개정되었으며, 이어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세정 13400-369(2000. 4. 1)호로 자치구서 조례개정 지침이 통보되었고,
- 현행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부격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2항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조례에 의한 서초구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서초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당초에는 분과위원회가 3개였는데 2개로 통폐합하는 것인지, 또 3개분과를 2개분과로 한다면 인원이 초과하게 되는데 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답) 현재 위원회는 구세심의위원회로 되어있고 분과위원회는 2개로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 2개로 되어 있으며, 심사청구분과위원회는 시장 권한 사항으로 구청에서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격으로는,

1. 지방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시·군·구는 5급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여 3년이상 종사한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4. 감정평가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5.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한자
6. 기타 지방세제도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임기 2년에 15인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

5. 護理자 및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암의 요지 : 없 음.

7. 실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 음.